
호주 민간투자사업 및 기업 조세 지원 관련 주요 정책방향과 제도·관리체계 조사 출장 보고서

2022. 12.

1. 출장 개요

- 일시: '22.12.12(월) ~ 12.17(토), 4박 6일(출·입국일 포함)
- 장소: 호주 시드니, 캔버라
- 출장자: KDI(4), 기획재정부 세제실(4) 총 8인
 - (KDI) 한성민 공공투자정책실장, 김석영 조세지출평가팀장, 정세나 전문연구원, 김수연 연구원
 - (기획재정부) 김준하 사무관, 이도희 사무관, 정철 주무관, 문재희 사무원

2. 출장 목적

- 민간투자제도가 발달된 호주의 관계 기관 방문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기업 조세 지원 관련 주요 정책방향 및 제도·관리 체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민간투자제도 및 기업 조세감면 제도의 개선 방안 모색
- 호주의 민간기업 세제 지원 현황 및 법인세 인하에 대한 효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및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 모색
 - 최근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 정부는 현재 법인세 인하(최고세율 25%→22%)에 대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인세를 비롯한 기업 과세 체계를 개편해 투자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부자감세 및 효과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
 -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경제규모를 단기적으로는 더 성장시키는 효과(기업투자촉진→경제성장→세수증가)와 법인세율이 투자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와 대기업에 집중된 과도한 세제 혜택이라는 의견 대립
 -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호주는 회계연도 기업 규모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는 일반 기업의 법인세율은 30%이며 소규모기업 매출 2천5백만불 미만에는 27.5%의 세율 적용하되 2026-27년까지 지속 인하(매출 5천만불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25%의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 예정)
 - * 세제개혁 이후 호주 경제는 성장률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투자 및 해외자본 유입이 늘어나고 재정수지도 흑자를 유지하는 등 법인세인하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조세지원 성과평가 방법 및 성과관리에 대한 제도·관리 체계 조사

- The Tax Institute의 Treasury, ATO, Board of Taxation, Inspector-General of Taxation and Taxation Ombudsman, Tax Practitioners Board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및 민간회원들의 지침 개발 및 교육· 네트워크 사례 조사를 통한 PIMAC 역할 확대방안 모색

3. 주요 면담 기관 및 질의사항

- 방문기관 및 주요 논의 사항
 - NSW(New South Wales) Treasury
 - 주정부의 민간투자 의사 결정 절차 및 기준
 - 사업별/단계별 평가 요소
 - 평가 이후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 PPP 사례
 - The Tax Institute
 - 호주 조세 체계 및 민간투자 제도(연방정부, 주정부 역할 분담)
 - The Tax Institute의 역할 (공공투자관리센터와 비교)
 - Treasury, ATO, Board of Taxation, Inspector-General of Taxation and Taxation Ombudsman, Tax Practitioners Board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및 민간회원들의 지침 개발 및 교육· 네트워크 현황
 - 2017년 호주 법인세 인하 찬반 논의 및 시행 효과
 - 조세지원 성과평가 방법 및 성과관리에 대한 제도· 관리 체계
 - 민간기업 지원 및 교육 체계 및 성과
 - 호주 Treasury 및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 Treasury 및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역할 및 주요 업무
 - Tax Analysis Division 주요 업무
 - 호주 사업자 번호(ABN) 체계, 부가세, 상품 및 용역세(GST), 원천징수를 포함한 기업 납세 의무

- 민간기업 세제지원(조세지출 현황) 및 사전 혹은 사후 평가방법론
- 성과 모니터링 및 관리 방식
- 프로젝트 평가시스템의 평가체계 및 평가방식
- 데이터 확보 (시각 데이터, 수치 및 설명자료 등)

<표 1> 주요 면담 기관 및 일정

일 자	일 정	
12.13 (화)	NSW Treasury 면담 (New South Wales)	Augustine Kang, Director, ISFU(Infrastructure and Structured Financed Unit 등
12.14 (수)	The Tax Institute 면담	Scott Treatt, General Manger Tax Policy and Advocacy, The Tax Institute 등
12.16 (금)	호주 연방정부 Treasury 면담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 면담	Phillip Harslett, Assistant Secretary, Business and Superannuation Tax Analysis Branch, Tax Analysis Division 등

4. 주요 회의 내용

가. NSW(New South Wales) Treasury

1) 개요

일시: '22.12.13(화) 15:00-18:00

장소: NSW(New South Wales) Treasury(52 Martin Pl, Sydney NSW 2000)

주요 면담자: 총 6인

① Augustine Kang, Director, Treasury Infrastructure&Structure Finance Team

② Khalil Khiran, Associate Director, Treasury Infrastructure&Structure Finance Team

③ Rob Pfitzner, Associate Director, Treasury Infrastructure&Structure Finance Team

④ Edan Corkill, Associate Manager, Global Markets, Investment NSW

⑤ Kassia Rouw, Senior Associate, Global Markets, Investment NSW

⑥ Sarah Laverty, Associate, Global Markets, Investment NSW

기관 소개

○ NSW(New South Wales) Treasury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재정 및 민자를 관리하고 시장 성과 모니터링, 재정 및 산업 관계 정책 개발 등을 수행

- NSW Treasury에서는 업무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의 영향을 측정하고 있음. 비용 대비 편익 및 위험에 대한 효과 분석을 위해 신규 Cost-Benefit Analysis(CBA) 모델을 개발하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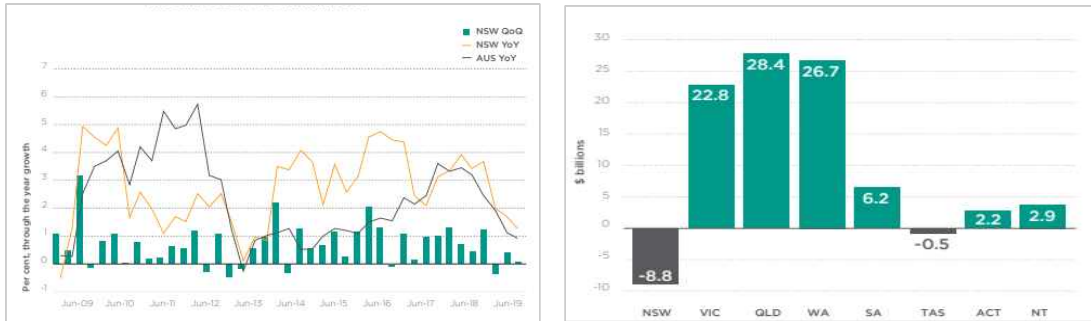
- 신규 모형은 사회, 경제적인 효과 뿐 아니라 환경적인 효과를 고려

2) 면담 내용

NSW 주정부의 재정상황

○ NSW 주정부는 지난 5년간 호주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토대로 NSW는 가장 낮은 수준의 정부 부채를 가진 주정부로 평가받고 있음.

[그림 2] NSW 주정부 경제성장률 및 정부부채 수준 비교



자료: NSW 2040 Economic Blueprint: Investing in the state's future(2019), NSW GOVERNMENT

- 재무부에서 주는 가이드라인 외에 각 부처의 사업평가 과정
 - 모든 부처의 사업은 사업의 전주기(Life-time) 동안 평가를 받음. 이는 클러스터(정책군)를 구성하여, 클러스터 내에서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평가
 - 재무부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은 지침과 같이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임. 하지만, 평가에 대한 결과 및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는 재무부에 보고해야하며, 이 보고된 정보는 cabinet(수상 내각)에 4년 주기로 보고
 - NSW에서의 프로그램은 평가 받을 자료를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한 후 평가를 받게 됨. 정성 평가로 사용하는 자료는 정량 평가 자료보다는 신뢰도 있는 자료로 평가 받기 어려우나 reference(참고 자료)로 사용되기도 함
 - CBA(Cost-Benefit Analysis)는 경제성 평가로 프로그램 및 재정 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평가인데, 이를 주관하는 기관이 있는지?
 - NSW 부처에서는 주관 부처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클러스터(정책군), 외주 계약을 통해서 진행됨. 한국과 같이 재정지출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특정 기관은 없음.
- 예산 수립 과정과 평가 간의 관계
 - 현재 평가의 결과가 예산 수립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 예산 수립의 과정에는 내각 지출 검토 위원회 (Cabinet Expenditure Review Committee (ERC))에서 검토하여 결정 후, 최종 NSW 수상이 결정

□ 호주 PPP 관련 사항

○ Infrastructure and Structured Finance Unit의 역할

- (NSW) NSW의 ISFU(Infrastructure and Structured Finance Unit)에는 크게 PPP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담당하는 정책 부문, 입찰비용 상환 등 재무구조 제언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관리 부문, 금융실사와 인프라 조달을 담당하는 금융 부문이 있음.

○ NSW 주정부 PPP의 관리 형태 및 역할

- (NSW) 호주의 PPP는 정책으로만 존재하며, 한국의 민간투자지원법 등과 같이 법률화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임. NSW는 개별 사례별로(case by case)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프로젝트로 규제자산모델(Regulated Asset Base(RAB) Model)이 존재하며, NSW에서 법안을 제정하고 있음.
- 현재 호주에는 강력한 파이프라인이 존재하나, 인프라를 구축할 능력이 있는 계약자 수는 매우 제한적임. 본 기관은 PPP 프로젝트의 sub-contractor가 어느 정도의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역할도 수행함.

○ NSW의 PPP 프로젝트 현황은?

- (NSW) 2014년부터 41개 프로젝트, 약 400억AUD가 투자되고 있음(철도 8, 의료 7, 도로 11, 수처리 4, 교육 2, 법률 2, 기타 7). NSW 정부는 꾸준히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NSW 정부의 성공적인 파트너 사례로 볼 수 있음.
- PPP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 1995년 최초 도입 후 2001, 2006, 2012, 2017, 2022년에 걸쳐 공표된 바 있음. 2022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규제자산모델을 PPP에 포함함.

○ NSW의 Procurement 방법?

- 작은 프로젝트는 주정부가 건축만 하거나 PQ panel를 통해 delivery agency에서 몇 개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추천하거나, 규모가 있는 경우 design and construction / 건축만으로 하고, 규모가 더 크면 PPP로 추진하기도 함.
- ppp 마지막 사례는 병원으로 정부는 기존 시설과 토지 제공/민간기업에서 사업을 수행(운영까지). 다만 social infra이기도 하고 환자들도 있어서 재정상으로는 문제는 없었으나, community engagement에서 정치인들의 반대도

있어 앞으로 사회 인프라 시설은 construction/construction and design의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에는 1billion 달러 사업 등이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커서 PPP 방식을 고려 중임. 다만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여서 텐더를 내놓기 전에 이미 컨소시엄이 구성되기도 함. 가끔 강한 컨소시엄이 와서 강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부가 계획한 것과 다르게 가는 경우도 있음. 인프라스트럭처 팀은 일본과 한국에서 좀 더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임.
- 삼성물산과 gs건설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gs건설은 shortlist된 경우는 없음. QL의 cross river railroad의 shortlist된 것으로 알고 있음. 한국 contractor들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 일본과 비교했을 때, 동남아쪽에서 사업을 다수 진행하여 NSW에서도 좀 더 수월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decision making process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발생하면 business case를 만들어, 주무부처에서 high level로 business case를 만들고 여러 곳에서 referee를 받아서 재정부에 올리고 재정부 인프라쪽에서 추천여부를 결정함. 여기서 추진결정을 하면 cabinet process까지 상정됨. 재정부 분야 장관들이 분기별 주요 투자 승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의 추가 내용을 요구하기도 함.
- cabinet이 승인하면 그 다음 business case가 수행됨. 그러면 처음에는 community engagement를 수행(정부가 하는 일 투표와 관계되기에 이 과정을 수행), 입찰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과 finance 등 market sound 등을 확인하는 절차인 market engagement(시장성 확인)를 고려함. 이후 정보를 사용해서, EIS 수행(환경에 미치는 영향 확인)(가뭄 시기에는 fresh water를 어디서 공수해올 것인가 등)
- 전기 수요/공급 등을 EIS 절차에서 delivery agency가 결정하고, 그다음에 stakeholder assessment와 EIS document가 financing되면 department of planning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30백만달러 이상이면 state significant infrastructure라고 해서 15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이를 가지고 delivery agency 등이 delivery strategy를 어떻게 할지를 해서 고민해서 다시 cabinet에 올려야 됨(work package / 위험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ppp 등 수행 방식을 결정) 정치인들이 sign off 하면, 이걸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RFP 등을 수행함(전체기간은 24개월 수행~10년)

- gateway 정책
 - 정부쪽에서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INSW라는 조직이 외부감사나 승인 단계에서 조언을 정부에게 주는데, 사업의 milestone이 어떻게 되는지를 tracking하며 project assurance 등을 하고 있음. 어떤 프로젝트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하면 이를 검토하고 있음.
 - gateway는 프로젝트의 마일즈스톤을 관리하는 절차라고 보면 될 것임.
 - * 진행단계를 확인하고 검토까지 2가지를 모두 수행하고 있음. 독립적인 컨설팅 조직이라고 보면 됨.
- 도로와 철도의 경우 재정사업이 아닌 PPP로 진행하는 사유
 - (NSW) 도로나 철도의 경우 여러 기술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기술적 측면에서 민간기업이 더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음. 다만, 본 부서에서는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시 재정사업 영역으로 돌아오게 되며, 이 경우 책임 소재(귀책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중재하는 역할도 수행함.
 - PPP로 수행 시 정부, 개인,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보유하여 투자하게 되며, 이후 결과물에서 민간과 공공의 책임소재를 구분하고 희망할 경우 한 쪽에서 구매도 가능함. 민간과 정부의 공동책임이므로 좋은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기본적인 취지임.
- PPP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가이드라인 위배 시 제재수단(불이익)이 있는지?
 - (NSW) 물론 법적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함. PPP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기관이 있으나,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1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만 검토를 수행함. 대규모 프로젝트 등은 어길 경우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 (NSW) 반대로 한국의 경우 법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단점은 없는지?
 - (KDI) 한국은 PPP 추진 단계별로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절차가 법제화 되어 있어, 민자 추진에 따른 기업의 전적인 창의성 저해 문제는 있을 수 있고 단계별 검토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움.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이 발생하거나 코로나 19 등 경제 상황이 바뀌는 경우 등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든 부분도 존재함.

- (NSW) NSW의 경우에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정치 시스템상의 내각을 통해 결론이 지어져야 함. 또한 개인 민자 기업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 편당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PPP의 형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음. 가령, 과거에는 기업이 1년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사업이 재무부로 이전될 경우, 사업추진 시점에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PPP추진시의 재정지원금간에 큰 차이(상승)가 존재하며, PPP로 전환할 경우 내각에 사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최근에는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PPP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한국과의 PPP수행 방식 비교

- (NSW) 민자 적격성 검토 시 어떤 관점 및 기준에서 사업을 검토하는지?
 - 정부고시사업(Solicited Project)과 민간제안사업(Unsolicited Project)으로 나누어지며, PIMAC이 검토를 수행함. 정부고시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의 B/C와 정책적 적합성 검토 후 AHP를 통과하면, VFM(적격성 조사, Value For Money) 수행하며, 이는 PSC(정부실행대안, Public Sector Comparator)와 PFI(민간투자대안, Private Finance Initiative)를 비교하여 민자로 진행되는 경우의 VFM이 더 높을 경우 민자로 진행함. 사업 자체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고, 정부와 민간 중 어느 수행주체가 더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방식임.
- (NSW) 프로젝트 예산 책정 방식은?
 - (KDI) PIMAC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예산이 책정됨. 프로젝트 제안 시의 금액과 총사업비가 차이가 나게 되며, 검토 결과 도출된 금액으로 책정되는 방식임.
 - (NSW) 예산과 실제 계약 체결 금액 간에는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무부에 이러한 금액 차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야 함.
- (NSW) 자금재조달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호주의 은행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25년간 대출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5년마다 자금재조달을 갱신함. 이자율이 높아지면 민간 부문이 책임을 지며, 이자율이 낮아지면 정부가 수익 중 50%를 가져감.
 - 한국의 경우 통상 컨소시엄에 은행이 참여하고 있어 선순위자금이 투입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장기계약 체결이 가능함. 호주처럼 5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계약 자체를 변경하는 형식의 재조달로, 중간에 이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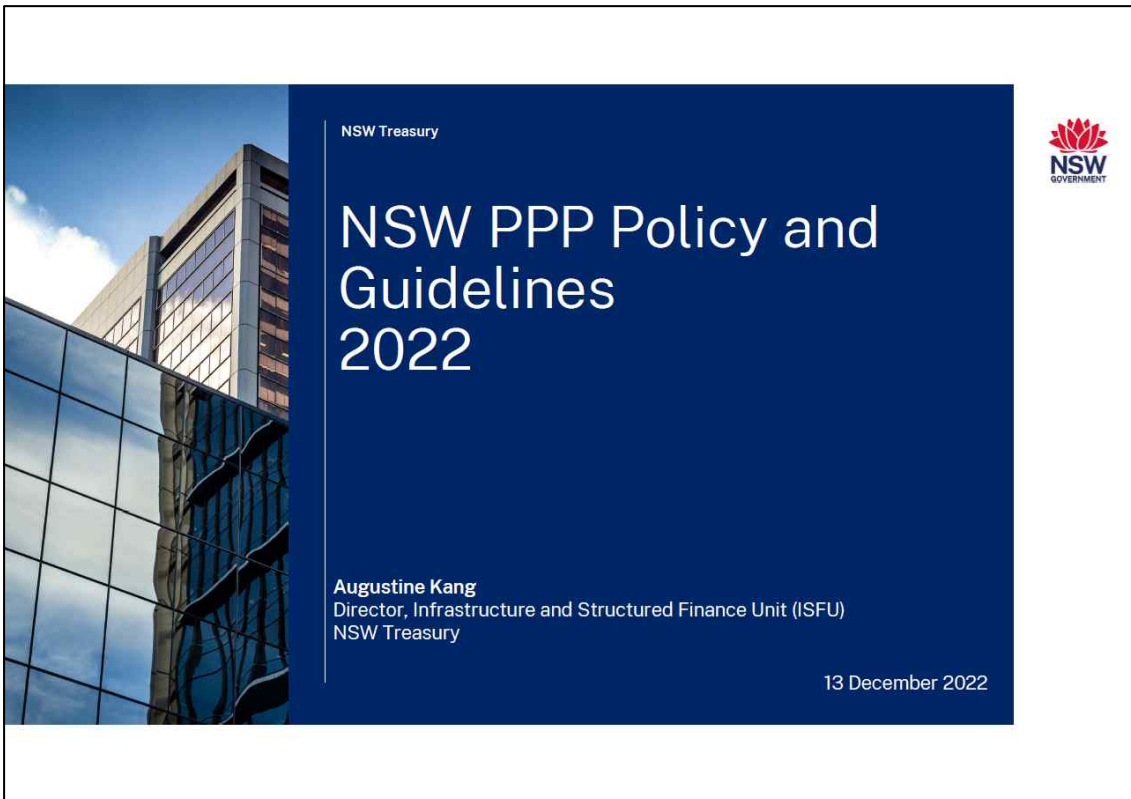
이 낮아지면 낮은 비용으로 채원 조달이 가능하여 수익이 증가하므로 민간기업과 정부가 이익을 공유함.

- (NSW) 현재 호주는 User-charge toll-road PPP조차 시행하기 어려움. 수요위험은 민간에서 부담하는지? SPC의 수익은 어느 부분에서 창출되는지?
 - 한국에는 BTO방식과 BTL방식이 있음. 도로 등의 BTO 사업은 사용자로부터의 요금 징수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운영을 하는 방식이며, 하수관거 등 BTL은 shadow toll 방식으로 요금을 징수하여 정부가 어느 정도 수익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차이가 있음. 도로사업의 경우, 초기 건설비용은 금융조달로 이루어지며 이후 수익은 사용료로 징수하는 방식임.
- (NSW) 호주의 경우 민자도로 중, 실제 도로의 수요가 예상 수요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O&M비용도 조달하기 어려워 은행들이 파산한 사례가 있었음. 한국에서였다면 해결이 가능했는지 여부
 - (KDI) 초기에는 MRG를 통해 수요가 추정수요의 50%를 넘으면 80%까지의 수익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전하였음. 이후 MRG는 폐지되었으나, PPP는 수요의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을 계산하여 금융구조를 조성함. 수익률에 맞추어 건설보조금 등 초기비용은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수행함.
 - 수요위험은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부담함. 특히 BTO방식에서 실제 수요가 예측 대비 적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간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재무적 타당성 분석 시 적용하는 (실질)할인율은 4.5%임. 이자율 하락 및 PPP의 수요위험이 낮아지며 할인율이 낮아진 측면이 있음. 한국에서는 SPC를 구성하여 건설회사, 금융회사가 포함되며, 건설회사가 4.5%의 기대이익만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건설로 인한 시공이윤을 가져가게 됨. Design & Construction turnkey 방식이 대부분임. 건설회사 중심으로 시작하여 시공 이후 자금재조달 과정에서 다른 투자자에 채권을 판매하는 방식도 존재함.
- (NSW) 호주의 경우, 금융투자자가 SPC 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건설회사 참여 지분이 매우 낮음. 한국은 PPP에 대기업 지배구조 특성에 따라 이러한 참여 구조(지분)가 반대인 것인지?
 - 최근 철도 등 대규모 민자 사업에 대주주가 은행인 경우도 존재함. 다만, 대기업 특성 상 자체적으로 설계, 시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건설사가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기업 여건 상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존재함. 대기업 건설사가 주도하면 프로젝트 추진 및 대주단 구성이 용이

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주가 되면 수익률만으로는 적극적인 참여 및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

- (NSW) 삼성물산이 PPP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
 - SPC는 독립법인으로, SPC의 운영 책임은 온전히 사업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기업과는 완전히 분리시킴. 자금조달은 SPC의 고유한 영역으로, 처음 대주단 구성에 삼성물산의 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더라도 SPC 설립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파산 등 문제 발생 시 삼성물산이 중간에 개입하여 SPC에 도움을 주는 방식은 불가능하며, 자금재조달을 통해 차입금을 다시 마련하거나 해지시지급금 등 관련하여 SPC와 정부 간 협상을 해야 할 것임.
- (NSW) PPP사업 추진 시 급격한 비용 증액 사유 발생 시 재정사업으로 다시 전환될 위험이 있음에도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 정부의 재정지원 가능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추진 가능한 사업 규모 및 수에 제한이 있을 것임. 민자로 진행할 경우 보다 적은 재정 지원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예상 수익률보다 수요가 증가할 경우 이윤을 공유할 수 있음. 다만 민자사업 추진 및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NSW) 호주의 경우 민자사업 참여 유인으로 입찰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3) NSW 발표 자료



Infrastructure and Structured Finance Unit

ISFU is a central infrastructure advisory unit that strengthens Government's ability to structure and procure large and complex infrastructure and energy projects including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The infographic consists of four columns, each with an icon and a text block:

- Icon:** A sunburst or gear-like symbol.
- Text:** Established to maximise efficiencies & benefits for State infrastructure investments.

- Icon:** The number '25'.
- Text:** Person team with public & private sector experience.

- Icon:** A dollar sign inside a circle.
- Text:** Procurement advice for major High Risk High Profile infrastructure projects (e.g. Projects >\$1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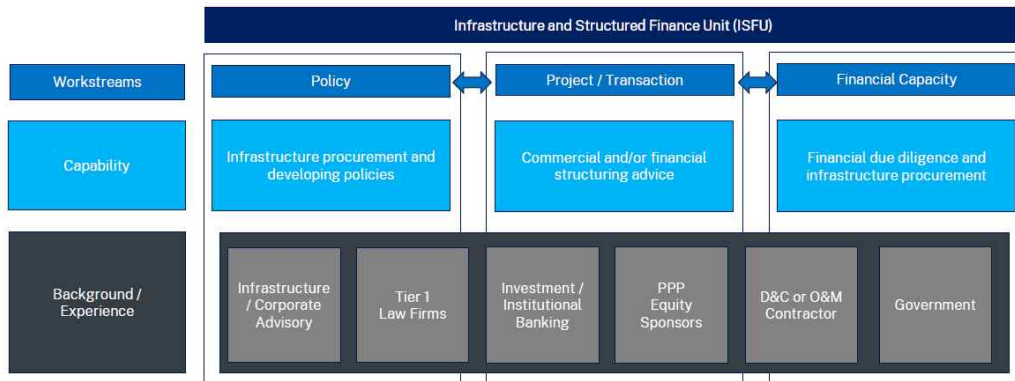
- Icon:** A trophy cup.
- Text:** Leading NSW Government on Policy Reform in the Construction Sector.

NSW Treasury 2

ISFU Structure & Capabilities



ISFU specialises in three unique but interconnected workstreams



NSW Treasury

3

PPP Activity in NSW



NSW have delivered a large number of PPPs over the last decade



\$40bn+

capital invested since 2014

- 8 Rail projects
- 7 Health projects
- 11 Road projects
- 4 Water projects
- 2 Education projects
- 2 Justice projects
- 7 Other projects

NSW Treasury

4

PPP Guidelines History



As PPPs have evolved, the Guidelines have also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NSW Treasury

5

What's new in these Guidelines?



The Guidelines contain a number of key changes and updates for both government Agencies and Industry

Agencies

- Inclusion of Regulated Asset Base (RAB) model
- Increase in the mandatory threshold for consideration of PPPs from \$100m to \$200m
- Addition of the PPP Assessment Framework for agencies to assess a project's PPP suitability
- Requirement for agencies to seek approval of the investment decision (funding) with the approval of the procurement (delivery) strategy concurrently
- Guidance on refinancing events and gains

Industry

- Guidance on the disclosure of the Public Sector Comparator (PSC)
- Guidance on Principal Arranged Insurance (PAI)
- New section on Innovation and PPPs
- New guidance on Augmentation

NSW Treasury

6

나. The Tax Institute

1) 개요

- 일시: '22.12.14(수) 11:00~14:00
- 장소: The Tax Institute(Level 37/100 Miller St, North Sydney NSW 2060)
- 주요 면담자: 총 7인

- ① Scott Treatt, General Manager, Tax Policy & Advocacy
- ② Robyn Jacobson, Senior Advocate
- ③ Julie Abdalla, Tax Counsel
- ④ Abhishek Shekhawat, Associate
- ⑤ Amanda Donald, Associate
- ⑥ Jeremy Kwok, Tax Consultant
- ⑦ Zoe-Marie Beeley, Tax Policy Assistant

기관 소개

- The Tax Institute는 호주 조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연구기관으로 조세 관련 신규 법안이나 정책 입안 시 컨설팅 역할과 더불어,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 교육 및 세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2) 면담 내용

The Tax Institute의 역할 및 Tax Policy and Advocacy팀 업무

- Q. Tax Institute의 주요 역할 및 구성은?
 - A. KDI PIMAC과는 달리 회원제로 운영되는 민간 조직으로, 조세제도 분석 및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함. 조세 관련 신규 법안이나 정책 입안 시 컨설팅 역할과 더불어,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
 - 주요 회원은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정부기관 종사자 등으로 총 인원 중 10% 가량이 정부기관 종사자이며, 이 외 인원 중 60%가 회계사, 40%가 변호사로 구성됨.
- Q. 조세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 자문을 수행하는지?
 - A. 법률 개정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며, 정부가 정책을 개발해서 국세청

이나 재무부에 제안하고 총리에게 제출하는 형식임.

- Tax Institute는 새로운 법안 제안 시 일차적으로 구성원들과 함께 먼저 활용해 보고, 이후 정부에서 재정비하여 보다 실용적이고 온전한 법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출함. Pilot Test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법이 현실적으로 적합한지 문구를 검토하고 정부와 전문가 시각을 중재하는 역할에 가까움.
 - Tax Institute가 정책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며, 법안 재정비 시 아주 드물게 멈출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음. 주로 법안이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함.
 - 자문에는 비공개/공개 자문이 있으며, 정책 입안 전 비공개로 자문을 수행하면 이후 국가가 국민에 공개하는 형식임.
- Q. 왜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지?
- A. 정부로부터 분리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임. 호주는 모든 전문가들의 회원 조직이 존재하며 유사한 역할을 수행함. 본 기관의 경우 80년 전 조세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 역할 견제와 국민 교육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짐. 조직 운영에 정부 예산은 투입되지 않으며, 개별 이벤트와 회원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음.
- Q. 민간회원들의 교육·네트워크 현황은?
- A. Tax Institute의 가장 큰 역할은 교육이며, 민간과 정부 구성원 대상 교육을 시행하고 일반적인 교육에 도움이 되는 과정을 개발하고자 함. 본 기관은 회계사 자격증 발급 기관으로, 회계·세무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1년에 40시간의 교육 이수가 필수적임. 회원 등록을 위해서는 연간 AUD 750.00을 지불해야 하며, 회원 대상으로 모든 교육과정은 무료로 진행됨.
 - 정부에도 자체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으나, 국세청의 교육 과정은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호주 조세지원 성과평가 방법 및 성과관리에 대한 제도·관리 체계
- Q. 호주의 조세지원 제도 관리 체계 구조는?
- A. 과세 시 기부금 등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개발 양성을 위해 혁신(innovation) 기업의 경우 조세 절감 혜택이 적용됨. 주로 조항에 해당은 되지만 할인하는 방안을 적용함.
 - 대표적인 예로,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해외에서 이미 소득세를 낸 상

태이므로 다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이중과세가 아님.)

- Q. 규제영향평가(regulation impact statement)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A. 총리 산하의 영향분석처(Office of Impact Analysis, OIA)에서 관리하며, 법안 제정 시 평가를 수행하며, 1년을 기간으로 하여 제도와 세액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다만 중간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고 하여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거나 법안이 변경되지는 않음.
- Q. 예외조항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수행하는지?
 - A. 조세에 대한 평가는 매년 이루어지며, 대표적인 예외조항으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CGT)가 있음. 주거용 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지 않으며, 거주 목적의 주택인 경우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윤은 조세 대상에서 제외됨. 법인이 자산을 구입하거나, 개인이 구매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약간의 할인이 있음. 예외조항에 대한 평가는 해당 조항이 없을 경우의 정부 세수를 제시함.
 - 조세 납부자에 의한 평가 시스템(self-assessment system)도 존재
 - 최근 GDP 상승으로 인하여 보육료가 인상되었는데, 특정 플랫폼이 존재하여 의료, 세금, 복지 시스템이 연동되는 구조임. 소득신고 시 복지·의료 기관에 정보가 공유되어, 중간에 소득이 늘어나면 추가 징수를 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함. 최종 납세 시 정산 거로가에 따라 추가 징수/지급이 이루어짐.
- Q. 호주 조세 및 조세지출 체계(연방정부, 주정부 역할 분담)
 - A. 세금 징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이중 시스템으로 구성됨. 연방정부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수입으로 인한 세금을 징수하며, 주정부는 지불급여세(payroll tax), 인지세(stamp duty), 토지세(land tax) 등을 징수함. 법원 역시 보통법(common law)에 근거한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존재하며, 법안 발의 시 의회를 통과해야 함. Tax Institute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에 컨설팅 기능을 수행함.
- Q. 일몰제도를 어느 수준으로 적용하는지?
 - A. COVID-19로 인한 단기 법안이 존재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용이 중단되도록 함. 호주는 법안을 수정·변경하기 매우 어려우며, 2016년 기준으로 일몰된 3%의 법률은 대부분이 한꺼번에 적용된 것으로, 10년~15년에 한 번 일몰 여부를 일괄 검토한 바 있음.

- Q. 혁신기업이 더 이상 혁신적이지 않음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기준은?
 - A. 검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문제를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법안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에도 실현할 인력이 부족한 현황임.
- Q. 실제로 국세청 개인 정보자료를 받아 검토하는지? 자료 제공에 있어 개인정보보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 A. 국세청의 숫자는 보안을 요하며, 특정 정보만이 공개됨. 세금신고자료는 조사 시점으로부터 4년 후 총액으로 공개되며, 개별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음.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 민간기업 세제 관련 이슈

① 2017년 호주 법인세 인하(세계개혁의 일환으로 호주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36%(2000년) 34%(2001년) 법인세율을 30%로 인접국인 뉴질랜드(33%)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찬반 논의 및 시행 효과

- Q. 한국정부는 법인세를 비롯한 기업 과세 체계 개편을 통하여 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 제고를 목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에서 22%)의 법인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으로 이러한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한 찬반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호주 법인세 인하 이후 효과 및 실제 투자유인 및 경제성장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견
 - A. 기업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개인 입장으로는 배당금(dividend)으로 지급됨. 개인이 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더라도 결국 개인 측면에서는 개인 금융자산에서 법인세 낸 만큼이 납세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법인세를 낮춘 효과가 저감될 수 있음.
 - 호주의 경우 법인세 효과 측면보다는 결국 정당 간 정치적인 대립이 근본적인 문제였으며, 정치적으로 이슈를 만드는 것에 가까운 측면인 것으로 사료됨. 법인세 인하 시 시간차의 문제일 뿐 총 세수효과는 동일하며, 이 부분까지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 및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론은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고려됨.
- Q. 세계개혁 이후 호주 경제는 성장률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투자 및 해외자본 유입이 늘어나고 재정수지도 흑자를 유지하는 등 법인세인하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반면 일반적으로 법인세 인하는 기업 투자를 증가 및 주식배당을 통하여 결국 국민소득, 생산성,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주장과 평균적으로 보면 법인세 변화가 경제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립

되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에 대한 효과에 대한 입장

- A. 개인 의견 측면에서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여 최종적으로는 세금 수입이 증가할 수 있어, 최종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
- Q. 호주의 법인세율은 회계연도 2016-17년 개정된 호주 예산안에 의해 기업 규모에 따라 1~1.5%의 법인세 인하*2017년 7월 1일부터는 일반 기업의 법인세율은 30%이며 소규모기업 매출 2천5백만불 미만에는 27.5%의 세율을 받게 되며 2026~27년까지 지속 인하하여 매출 5천만불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25%의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할 예정인데, 법인세 인하시 대기업 과 중소기업간 차별화 필요성에 대한 견해. 더불어 법인세 인하로 인한 기업 이윤을 투자에 한정하여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어, 대기업에 한정된 혜택에 불과하다는 논리에 대한 의견은?
 - A. 호주의 경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법인세를 36%에서 30%로 인하한 것이며, 결국 3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최종적으로는 25%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대기업과 다국적기업, 또는 민간투자나 배당으로 인한 소득에는 30%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호주 내 중소기업에 한하여 30%보다 낮은 비율로 징수할 예정임.
 - 호주의 주요 산업분야는 광업, 농업, 교육 등으로, 광업과 농업이 70%를 차지함. 투자나 고용증대 효과는 대기업에서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조세제도에서 대두되는 문제가 많아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해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 소득세, 간접세(부가가치세)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업의 재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러한 직접적인 근거 자료는 부재한 상황임.
- Q. 호주는 소득세 비중이 매우 높는데 정년 이후 소득 보장이 되어 있는지?
 - A. 소득의 12%를 퇴직연금 계정으로 넣게 되어 있으며, 67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음(self-funded).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관리하나, 호주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며 다수의 연금 관련 펀드가 존재함. 연금은 회사가 사원의 연금 계정에 돈을 지불하는 부분을 포함, 정부로부터 강한 규제를 받고 있음. 연금펀드는 신탁으로, 운용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금은 보호받는 구조임.

② 대기업 조세회피 관련 이슈

- Q. 대기업의 조세회피 관련 미디어 보도자료(호주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2020/21 회계 연도에 대기업들은 총 689억 달러에 달하는 법인세를 납부. 이는 2,468개 국내 기업과 외국인 소유 기업이 낸 세금으로 전년 대비 19.8%나 증가했으나 이들 기업의 32%에 달하는 800개 기업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에 대한 의견
 - A.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을 만한 합법적인 유인은 많이 존재함. 본 기관은 기업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지난 연도의 기업 손실로 인한 조세 미납시 미디어와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오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 상장사는 법인세 납세분을 공개하며, 비상장사는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음. 미디어는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에 주목하는데, 사실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한 경우가 많음. 전년도 손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올해의 사례를 보며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잘못된 보도의 경우(이는 현재 호주내 집권정당 교체 등 정치적인 이유도 존재)가 다수 존재함.
- Q. 호주 국세청(ATO)은 조세회피 관련하여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및 “전년 대비 손실을 보고하는 기업들을 추가적인 정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의견을 보도자료로 제시. 또한 앤드류 리 재무 차관은 모든 기업들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리 차관은 기자간담회 시 “정부는 다국적 기업들이 악용하는 세금의 허점을 좁히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는데 호주정부는 다국적 기업들이 악용하는 세금의 허점을 좁히기 위해 어떠한 정책 및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지?
 - 국세청은 세액 차이(tax gap)에 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기타 분야에 비해 예측치와 실제 간 간극이 크지 않은 편임.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강한 규제를 받아, 1년 내내 기업의 재무팀과 국세청이 교류함. 약 1,400개 기업의 자료가 공개되고 있음.
 - 기업 손실로 인한 미납은 호주의 산업 구조 때문일 수 있는데, 호주의 경우 1차 산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광업의 경우 초기 몇 년 간 투자를 해도 광물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연속적인 손실이 있으며, 농업 역시 가뭄으로 인한 손실이 자주 발생함.
- 물가 및 상품가격 증가로 법인세(corporate tax) 역시 10년 만에 최고치로 증가하였으나 국세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의 30% 가량이 법인세를 지

불하지 않았으며, 세금 체납액이 4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견해는?

- A. 해당 30% 수치는 아직 세액 산정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450억 달러는 국세청의 부채로, COVID-19 기간 동안 세금 징수를 유예하고 있어 국세청이 청구하지 않은 것임 (개인, 기업 포함).

③ 다국적기업 초과이윤 과세, 글로벌 최저한세 이슈

-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아시아의 디지털화와 세금(Digitalization and Taxation in Asia)’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합의를 끌어낸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윤 과세가 도입되면 한국과 호주, 중국, 일본 등은 법인세수가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앞서 OECD는 지난 7월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을 막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필라1)와 글로벌 최저한세(15%·필라2) 도입 방안을 마련해 130개국의 합의를 끌어낸 바 있음.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이 초과이윤을 낸 기업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들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세는 줄더라도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다른 글로벌기업에 대한 과세가 늘어 전체적으로 증가 효과가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 분석은 필라1만을 따져 필라2까지 고려한 전체 세수 변화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필라2의 경우 아직 과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수 측면에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
- Q.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합의를 끌어낸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윤 과세가 도입되면 호주 법인세수 증감에 대한 예측과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의견
 - A. 다국적기업이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는 주로 외국자본이 광업 등의 다국적기업을 구매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음. 호주에서는 이전비용에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다국적기업 초과이윤 과세로 인한 영향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물론 불법적으로 조세 회피하는 기업이 존재하나, 국세청에서 조세 회피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함. 호주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엄격하게 부여되는 국가임.
- Q.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전망은?
 - A.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해도 늘어나는 세수는 1% 미만으로, 글로벌 스탠

다드여서 적용하는 것일 뿐 호주의 세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다. Treasury 및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1) 개요

일시: '22.12.16(금) 10:00~12:00

장소: Treasury(이하 '재무부')(Langton Cres, Parkes ACT 2600)

주요 면담자:

- ① Philip Harslett, Assistant Secretary, Business and Superannuation Tax Analysis Branch, Tax Analysis Division, Treasury
- ② David Gardiner, Policy Analyst, Business and Superannuation Tax Analysis Branch, Tax Analysis Division, Treasury
- ③ Shane Kirby, Aurion Administrator, Business and Superannuation Tax Analysis Branch, Tax Analysis Division, Treasury
- ④ Darren Kennedy, Assistant Secretary, Indirect Tax and Tax System Analysis Branch, Tax Analysis Division, Treasury
- ⑤ Richard Maher, Assistant Secretary, Personal Tax and Social Policy Analysis Branch, Tax Analysis Division, Treasury
- ⑥ Adrian Jeczewski, Assistant Commissioner, ATO Finance, ATO
- ⑦ Lorena Arpke, Assistant Commissioner, ATO Finance, ATO

기관 소개

- 재무부(Treasury)와 국세청(ATO)는 호주의 정부 세법개정안을 제시하고 운영하는 정부기관으로서 호주의 조세지출 상황 및 세금운영과 관련한 기업과의 관계, 쟁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확인할 수 있음.

2) 면담 내용

조세지출 전반

- Q. 지난 3년 동안의 조세지출(tax expenditures) 규모(항목, 액수)에 대한 추이와 지난 3년간 새롭게 도입된 조세지출의 연도별 규모

- A. 조세지출보고서에 신규로 포함된 정책은 2019, 2020, 2021년도 기준 및 변동 조세체계 보고서(Tax Benchmark and Variations Statements) 표 3.2에 제시됨. 2019년에 2건, 2020년 5건, 2021년 5건이 추가되었으며, COVID-19의 영향 완화 목적으로 도입된 단기 규정도 존재함.

[그림 3] 신규 추가된 기준조세체계(2021)

Code	Benchmark variation title	Reason for new benchmark variation
A5	Exemption for New Zealand sporting teams and support staff	The 2021-22 Budget measure 'COVID-19 Response Package – ensuring New Zealand maintains its primary taxing right over members of its sporting teams and support staff due to COVID-19' introduced an exemption for members of New Zealand sporting teams and support staff that may have been required to spend more than 183 days in Australia in a 12-month perio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B28	Exemption for COVID-19 business grants	The 2021-22 MYEFO measure 'COVID-19 Response Package – making COVID-19 business grants non-assessable non-exempt' extended the measure which enables payments from certain state and territory COVID-19 business support programs to be made non-assessable non-exempt (NANE) for income tax purposes from 20 June 2021 until 30 June 2022.
B46	Digital Games Tax Offset	In the 2021-22 Budget, the Government introduced a Digital Games Tax Offset to provide a 30 per cent refundable tax offset for qualifying Australian digital games expenditure from 1 July 2022 as part of the Digital Economy Strategy. The 2021-22 MYEFO measure 'Digital Games Tax Offset – expansion' will expand the Digital Games Tax Offset from 1 July 2022 to include qualifying expenditure on eligible games following their public release.
B86	Patent box concession for Australian medical and biotechnology innovations	The 2021-22 Budget measure 'Patent Box – tax concession for Australian medical and biotechnology innovations' introduces a patent box for eligible corporate income associated with new patents in the medical and biotechnology sectors.
G7	Decommissioning levy for Laminaria-Corallina oil fields	The 2021-22 Budget measure 'Decommissioning Costs – Laminaria-Corallina oil fields and associated infrastructure' imposes a temporary levy on offshore petroleum production to recover costs of decommissioning the Laminaria-Corallina oil fields and associated infrastructure.

자료: Tax Benchmarks and Variations Statement 2021(2022.01.), Commonwealth of Australia

- Q. 최근 5년 간 GDP 대비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이며 증가나 감소추세가 있는지?
- A. 호주의 경우 2013년 이후로는 총 조세지출액을 보고하지 않아 조세지출 간 상호 작용 효과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2021년에 발표된 정량화된 총 세금 지출액의 합계는 GDP의 약 10%임. GDP 대비 총 세금 지출 비중은 주로 주거지로 인한 이윤 면제, 연금의 낮은 세율에 의해 결정됨. 세금 지출은 자산 가격과 연동되며, 자산 가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임.

- Q. 한국은 국가재정과 관련된 법률에서 총 조세지출액의 증가 상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호주는 조세지출액의 총 규모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잡고 있는지?
- A. 정부 재정 정책은 순 부채규모 축소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음. 2022-23 예산서의 표 3.1 세부 내역이 제시됨.

[그림 4] 호주 정부 일반부문 예산 집계

	Actual	Estimates				Total(a)	Projections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32-33
	\$b	\$b	\$b	\$b	\$b	\$b	% of GDP
Underlying cash balance	-32.0	-36.9	-44.0	-51.3	-49.6	-181.8	
Per cent of GDP	-1.4	-1.5	-1.8	-2.0	-1.8		-1.9
Receipts	584.4	607.2	621.4	642.8	679.0	2,550.5	
Per cent of GDP	25.4	24.5	25.3	25.1	25.2		26.0
Tax receipts	536.6	562.9	574.3	590.5	629.3	2,356.9	
Per cent of GDP	23.4	22.7	23.3	23.0	23.4		24.1
Non-tax receipts	47.8	44.4	47.1	52.4	49.7	193.6	
Per cent of GDP	2.1	1.8	1.9	2.0	1.8		1.9
Payments(b)	616.3	644.1	665.5	694.2	728.6	2,732.3	
Per cent of GDP	26.8	25.9	27.0	27.1	27.1		27.9
Gross debt(c)	895.3	927.0	1,004.0	1,091.0	1,159.0		
Per cent of GDP	39.0	37.3	40.8	42.5	43.1		46.9
Net debt(d)	515.6	572.2	634.1	702.8	766.8		
Per cent of GDP	22.5	23.0	25.8	27.4	28.5		31.9
Net interest payments(e)	15.0	13.6	16.6	19.4	26.5	76.1	
Per cent of GDP	0.7	0.5	0.7	0.8	1.0		1.5

a) Total is equal to the sum of amounts from 2022–23 to 2025–26.
b) Equivalent to cash payments for operating activities, purchases of non-financial assets and principal payments of lease liabilities.
c) Gross debt measures the face value of Australian Government Securities (AGS) on issue.
d) Net debt is the sum of interest bearing liabilities (which includes AGS on issue measured at market value) less the sum of selected financial assets (cash and deposits, advances paid and investments, loans and placements).
e) Net interest payments are equal to the difference between interest payments and interest receipts.

자료: Budget October 2022-23(2022.10.25), Commonwealth of Australia

- Q. 조세지출에 대한 일몰 규정 여부 및 일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 A. 호주의 경우 대부분의 조세지출에는 일몰 규정이 없으며, 변경 또는 폐지 시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야 함. 일부 조세지출은 COVID-19로 인한 지원과 관련된 상태로, 관련 정부 지출 중단 시 연동되어 중단됨.
- Q. 조세지출(tax expenditures)과 기준조세체계(a benchmark tax system)를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즉, 조세지출의 범위는 무엇인가?

- A. 기준조세체계는 재무부의 판단에 의거하여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소득세 및 간접세에 대한 기준을 포함함.
- 재무부는 지난 조세지출보고서 이후로 발표된 신규 정부 정책 검토 시,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 ATO)과 협의하여 새로 도입된 정책을 조세 지출로 처리할지, 혹은 기준조세체계의 일부로 취급할지 결정함. 정책이 조세지출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은 없음.
- 기준조세체계가 주관적으로 결정되므로, 대체기준(alternate benchmark)이 조세지출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문서(article)를 제시함. 2017년에는 연금 분석, 2018년 소유주 거주 주택, 2019년 상품 및 서비스세, 2021년 주류세를 포함함.
- 조세지출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이 조세지출에 포함된 사례는 없음.

□ 신규 조세지출 도입 관련 사항

- Q. 재무부는 정부 세법개정안(tax code reform bills)에 포함되는 조세지출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정하는가?
 - A. 조세 정책은 재무부의 지원으로 재무부 장관(Treasurer)이 개발하며, 내각이 동의해야 공표 가능함.
 - 조세지출의 추가, 변경, 제거를 포함하여 조세 정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장관은 정부의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 전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Q. 신규 조세지출에 대해 규제영향평가(RIS, Regulation Impact Statement)를 수행하고 있는데, 제도 운영 상 어려운 점은?
 - A. RIS는 총리 산하의 모범사례 규제처(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 현재는 영향분석처(Office of Impact Analysis, OIA)로 개칭))에서 관리하며, 이 부분에서 재무부가 결정하는 바는 없음.
- Q. 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면제되는 경우, 연 몇 건 정도 면제되는지? 평가 수행 및 면제 건수의 비율이 어떤지?
 - OIA 보고서에 의하면 2014-15년부터 2019-20년 까지 253건의 RIS 평가 대상 중 4건이 면제됨.

[그림 5] 연도별 규제영향평가(RIS) 수행 실적(2014-15~2019-20)

Year	Best Practice RISs		Independent Reviews	Prime Minister's Exemptions	Total
	(No.)	(%)			
2014-15	38/48	(79)	6		54
2015-16	37/49	(76)	9		58
2016-17	26/35	(74)	12	1	48
2017-18	22/28	(79)	10	1	38
2018-19	11/16	(69)	9	1	26
2019-20	5/16	(31)	12	1	29
Total	139/192	(72)	58	4	253

자료: Compliance with Australian government regulation impact statement requirements(2021. 06), Office of Impact Analysis, Australia

- Q. RIS의 수행주체가 정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건의 조세지출 규제영향평가 당 몇 명의 인원이 투입되는지?
 - A. 정부 부처는 RIS를 수행하며, OIA에서 이를 검토하고 4점 척도(불충분(insufficient), 적절(adequate), 양호(good practice), 모범(exemplary))로 평가함. 일반적으로 직원 1~2명이 해당 부서의 RIS를 수행함. 대체로 정량보다는 정성평가가 이루어짐.
- Q. 평가방법의 기본적인 구조 설명 요청
 - 연방정부 평가 정책 및 평가방안(The Commonwealth Evaluation Policy and Toolkit)은 2021년에 도입되었으며, 연방 전역에서 평가의 범위, 품질 및 적용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을 제시함. 이와 더불어 평가 계획, 조달, 방법론 및 적용을 위한 일련의 방안을 제시함.
- 조세지출 사후 성과평가 관련
 - Q. 조세지출에 대한 정기 사후평가제도는 없고, 감사원(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ANAO)에서 의회의 요청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동일한지?
 - A. 조세지출은 정기 감사 대상은 아님.
 - Q. ANAO의 감사는 정치적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하는 비정기적 감사인지?
 - A. ANAO는 기능 및 권한의 수행에 대하여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한 감사원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기능 및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감사원장은 특정 감사의 실시 여부, 특정

감사의 수행 방식, 특정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에 관하여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완전한 재량권을 지니며, 6개월~1년에 걸쳐 감사를 진행함.

- 기능 및 권한 행사 시, 감사원장은 회계감사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f Public Accounts and Audit, JCPAA)에 의해 결정된 의회의 감사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함.
- Q. 감사 결과 부적절 의견으로 개선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 A. 재무부는 통상적으로 조세지출보고서에 대한 ANAO의 권고안에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동의함.
- Q. 조세지출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이 있는지?
 - A.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제안, 총리에 의해 정부의 규제영향평가(RIS) 요건에서 면제된 제안, 정부의 RIS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에 대하여 시행 후 검토(Post implementation review, PIR)가 요구됨. 2014년과 2022년 사이 재무부 포트폴리오에서 12개의 PIR이 수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도입된 조세 지출의 일부에 불과함.

□ 조세지출보고서 관련 사항

- Q.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세지출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는데, 조세지출의 통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는지?
 - A. 조세지출액은 재무부와 국세청에서 추정하며, 추정치는 소득신고, 설문 조사 데이터 및 국민계정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에 의거함. 조세 면제 시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아 어려움이 존재함.
- Q. 과거 실적 이외에도 당해 연도에 대한 조세지출 감면예상액을 추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정에 사용되는 모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되는지?
 - A. 조세지출보고서에 적용되는 모형은 경제 성장과 함께 조세 규모가 성장하여 시작점보다 성장한다는 기초를 가진 '기본 이상의 성장(base plus growth)' 프레임워크에서 작동하며, 매년 예측치를 제시함. 모형은 매년 업데이트되어 국세청과 재무부 간 공유됨.
 - 유동적이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조세지출의 경우 완료된 연도의 실측치만 제시하며, 이후 연도의 추정치는 정량화하지 않음.
- Q. 통계집계 또는 추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조세지출항목의 경우, 어떻게 관리하는지?
 - A. 신빙성 있는 데이터가 없는 항목의 경우, 평가범위와 함께 정량화되지

않은 것으로 제시함.

- Q. 조세지출보고서 발간 시기와 그 이유는?
 - A. 조세지출보고서는 보통 1월에 발간되며, 이는 조세지출보고서가 해당 시기까지 발간되어야 하는 중기 경제 및 재정 전망(Mid 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YEFO) 문서의 일부이기 때문임. 최근 몇 년 동안 MYEFO는 12월에 발표되었으며, 2022년에는 예외적으로 2022-23년 10월 예산으로 10월에 발표됨.
- Q. 조세지출에 해당하는 항목 중에서 조세지출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는 조세지출이 있는지? 조세지출보고서에 수록하는 항목과 수록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구분기준이 있는지?
 - A. 조세지출보고서는 모든 세금 지출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일부 항목은 누락되거나 후속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음. 재무부장관이 투명성과 접근성을 강조함에 따라, 보고서 공표 시 조세지출·소득·성별·나이에 따라 분류하여 이해가 가능하도록 분석표를 별첨하려 노력 중임.
- Q. 조세지출보고서에 수혜자별·소득별 귀착효과(consequential effect)를 제시하는지?
 - A. 최근 몇 년 동안의 조세지출 보고서에는 해당 정보가 포함되지 않음. 조세지출은 영향을 받는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구분됨(항목A: 개별 납세자에 영향, 항목B: 사업체 납세자에 영향). 일부 세금 지출은 여러 유형의 납세자에 영향을 미치나, 보고서 상 식별되지 않음.
 - 이번 년도에는 세출 관련 개인, 기업, 간접혜택 등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여 검토하고자 함.
- Q. 전망치와 실적치 간 차이로 국회 및 감사원 등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 A. 재무부는 상원의원으로부터 조세지출보고서 내 상원 추정치에 대한 질의를 받은 바 있으며, 요청 시 상원의원에 답변을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함. 산출액을 제시하고자 하나, 완벽한 수치는 아님.
 - 재무부는 세금 지출 추정의 불확실성을 표현하고자 ‘매우 낮음’부터 ‘높음’까지의 신뢰도 등급을 제시하며, 세부 내역은 2021 보고서 부록 A의 섹션A1에서 확인 가능함.

[그림 6] 세금 지출 추정의 신뢰도 평가범위

Table A1: Reliability of quantified benchmark variations for 2021-22

Reliability rating	Number of benchmark variations
High	3
Medium – high	11
Medium	58
Medium – low	27
Low	37
Very low	4
Total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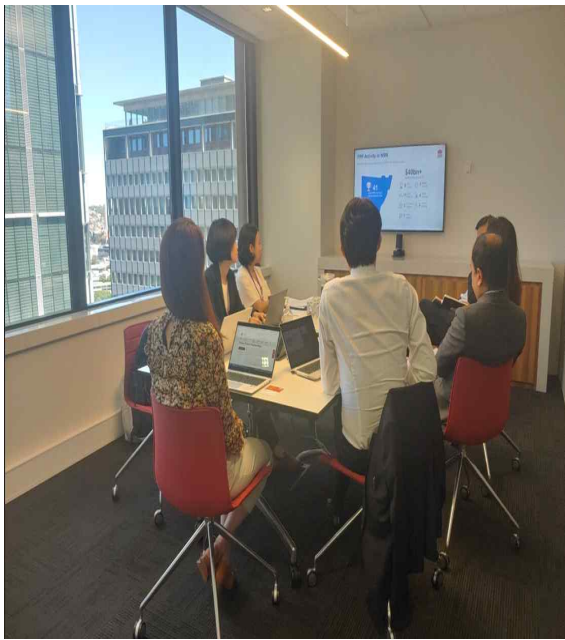
자료: Tax Benchmarks and Variations Statement 2021(2022.01.), Commonwealth of Australia

- Q. 조세지출예산서 상 조세지출과 일반 재정지출 간 비교 등을 한 적이 있는지?
 - A. 2013년 이전 조세지출보고서에는 재정지출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항목별 조세지출액을 제시함.
 - 조세지출보고서에는 지출의 목적을 제시하며, 지출 규모와 관련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음. 기능 분류를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음.

□ 기타 사항

- Q. 현재 조세 지출이 복지 측면에서 확장되는지, 혹은 기업 투자 인센티브 나 신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 A. 별다른 추세는 없으며, 특정 세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타 부서가 있음. 조세정책은 다른 정부기관이 결정하며, 재무부는 경제적 효율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음. 연구개발 시 인센티브는 산업부 산하에서 운영됨.
- Q. 세입/세출 평가 인원은 각각 몇 명 정도인지?
 - A. 주로 분석팀 50명이 한 달 간 수행하며, 국세청에서는 별도로 30명이 투입됨.

(1) NSW Treasury



NSW Treasury



(2) The Tax Institute



The Tax Institute



(3) Treasury/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

